



“혁신과 역량강화로 최고의 시설관리 구현”

남동구도시관리공단



□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구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 외에도 정보 공개에 대한 내부 검토 후 판단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개법 제3장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관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대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1.01.29.)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정보공개법 제3장 제9조	기타적용법령
부서 공통	전 부서	보안	국가안전보장 관련 인원, 문서, 자재 시설 현황	1호, 2호	
			비밀(대외비) 문서		
			전산 관련 보안자료(IP, 내부시스템 등)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세외수입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관련 계좌 정보 등	6호	
공통사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정보공개법 제3장 제9조	기타적용법령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팀	감사	외부기관 감사관련 서류일체	5호	
			자체감사, 감찰 또는 조사관련 서류일체	5호	
			징계 직원의 신상정보	5호, 6호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5호, 6호	
			기타 혐의 등 검토 중인 확정되지 않은 사항	5호	
			임직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소송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4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인사	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급여, 수당, 연금 등)	6호	
			직원의 임용, 근무평정, 징계 등에 관한 정보	5호	
			채용, 승진에 관한 업무	5호, 6호	
			인사제도 기획 관련 정보	5호	
		교육훈련	교육훈련 성적 등 자료 일체	5호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정보공개법 제3장 제9조	기타적용법령
기 획 경 영 본 부	기 획 경 영 팀	계약	입찰, 계약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보건	건강검진 진단 결과	6호	
		노무	노동조합 관련 정보	4호	
		인감	인감 관련 자료(사용대장, 발급대장, 관리 등)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위원회	각 종 위원회 회의 내용 및 위원의 개인 식별 정보	5호, 6호	
		예산	예산안 사정에 관한 사항	4호	
	사 업 운 영 팀	민원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운영	신청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신고자 관련 정보(주차 불법·부정 신고 등)	3호	
			이용 요금 감면 관련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5호	
기술지원	CCTV 영상 저장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정보공개법 제3장 제9조	기타적용법령
기획 경영 본부	사업 운영팀	기술지원	시설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7호	
		기타	기타 계획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5호	
시설 관리 본부	시설 관리팀	민원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운영	이용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이용 요금 감면 관련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5호	
		기술지원	CCTV 영상 저장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설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7호		
	체육 센터	민원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운영	회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이용 요금 감면 관련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5호	
			강사선발, 평가, 범죄전력조회 등에 관한 사항	5호	
	임대위탁에 따른 입찰·계약 정보		6호, 7호		

소관부서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정보공개법 제3장 제9조	기타적용법령
시설 관리 본부	체육 센터	사업운영	대관 및 사용허가 관련 개인 신상 정보	6호	
		기술지원	시설 점검, 물품, 방역 등과 관련 계약 정보	6호, 7호	
			CCTV 영상 저장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설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7호	
소래 아트 홀	문화 센터	민원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운영	이용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이용 요금 감면 관련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5호	
			강사 및 인력운영 선발, 평가, 범죄전력조회 등에 관한 사항	5호	
			대관 및 사용허가 관련 개인 신상 정보	6호	
		기술지원	시설 점검, 물품, 방역 등과 관련 계약 정보	6호, 7호	
			CCTV 영상 저장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설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7호	